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71 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 김교흥 · 허종식 · 소병훈

홍기원 • 문진석 • 박정현

이훈기 • 한정애 • 김윤덕

이해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노후·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,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,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, 자율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(안 제74조).

#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따른 재개발사업"을 "따른 재 개발사업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 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"으로, ""재개발 사업""을 ""재개발사업등"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"을 "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"를 "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74조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3 3조"로 하고.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재개발사업의 정비 구역지정"을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 구역지정 고시일과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 른 자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민 합의체 신고 고시일,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"으 로. "재개발사업의 시행"을 "재개발사업등의 시행"으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74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제74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~ ④ (생 략) 감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(이하 -----따른 재개발사업 및 이 조에서 "재개발사업"이라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한다)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관한 특례법」 제17조 및 제18 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같 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6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만,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에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 개발사업----"재개발사업등".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 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 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 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. 1.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 1.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등-----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|

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- 2. <u>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</u>
  <u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</u>
  <u>제74조</u>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- 3.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이 되는 경우(취득 당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.

가. · 나. (생략)

----.

- 2.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또는 「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」 제33조-----
- 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과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민합의체 신고 고시일,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----재개발사업등의 시행-----

가. • 나. (현행과 같음)